

『통일문제연구』 원고 모집 규정

『통일문제연구』는 통일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(사단법인)통일문제연구원에서 년1회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. 본 학술지는 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연구, ② 통일된 국가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민족의 역사, 문화, 사회 측면의 연구, ③ 통일 후에 직면할 남북한의 언어문제, 교육문제, 사회문제 등에 관한 연구, ④ 이념적,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한민족 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, ⑤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사업 등 남북한의 대내외적인 현황과 통일에 관련된 제반 연구들을 게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.

원고 게재 및 작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“『통일문제연구』 원고작성 및 제출요강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심사 규정

제정: 2018. 11. 5

I. [논문심사 기준] 본 학술지의 논문심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.

- ①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의 타당성: 연구문제의 적정성, 독자의 관심유발,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
- ②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기여도: 연구주제의 참신성, 기존연구와의 차별화, 학문적 기여도 등
- ③ 논술구조의 논리성: 구성의 체계성, 논리적 일관성, 분석방법의 적절성 등
- ④ 관련문헌과 사용 자료의 적절성: 관련문헌의 적절한 사용, 논지에 적합한 인용 등
- ⑤ 원고작성의 완결성: 분량의 적절성, 어법의 정확성, 원고 투고 요강 준수여부 등

II. [심사절차]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.

- ① 저자의 익명성 :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 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.
- ② 심사위원 위촉 :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- ③ 심사의뢰 :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

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.

- ④ 기일 :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II. [심사위원 판정] 논문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'게재 가,' '수정 후 게재,' '게재 불가'의 세 등급으로 나눈다.

- ① 게재 가 : 위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을 충분히 충족한 논문. 교열과정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치기만 하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수정 후 게재 : 위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부분적인 또는 종합적인 수정이 필요한 논문. 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문제가 수정될 수 있는 종류이고, 수정된 후에는 게재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.
- ③ 게재 불가 : 논문이 심사기준 항목 전반을 충족하지 못해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쓰지 않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

III. [편집위원회 종합판정]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한다.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을 토대로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을 내린다. 종합판정의 등급은 '게재 가,' '수정 후 게재,' '게재 불가'로 한다.

- ① 게재 가 : 현 상태에서 게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, 저자 자신이 일부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님. 다만 이 경우 맞춤법이나 주석 표기의 방법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교정을 요구할 수 있음.
- ② 수정 후 게재 : 논문 심사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. 수정이 만족스러운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
- ③ 수정 후 재심 :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함. 기고자의 수정을 거쳐 다시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이 원고 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논문의 수준이 『통일문제연구』 게재에 적당한지 심사
- ④ 게재 불가 : 『통일문제연구』에서 게재가 불가함을 의미. 다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, 새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

IV. [논문의 수정] 논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근거로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, 저자는 이에 응하거나,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. 심사 결과 '수정 후 게재' 또는 '수정 후 재심'의 판정을 받고,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

거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.

V. [종합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] '게재 불가'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, 신청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한다.

VI. [심사위원 판정과 편집위원회 종합판정] 심사위원의 판정과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사이의 관계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.

<초심 논문 심사 판정표>

심사위원 판정			편집위원회 종합판정
심사위원1	심사위원2	심사위원3	
가	가	가	게재 가
가	가	수정	
가	가	부	
가	수정	수정	수정 후 게재
수정	수정	수정	수정 후 재심
가	수정	부	
수정	수정	부	
가	부	부	게재 불가
수정	부	부	
부	부	부	

<재심 논문 심사 판정표>

심사위원 판정			편집위원회 종합판정
심사위원1	심사위원2	심사위원3	
가	가	가	게재 가
가	가	부	
가	부	부	게재 불가
부	부	부	

VII. [이월게재]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.

▶ 원고작성 및 제출요강

I. 원고 제출요강

- 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, 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『통일문제연구』 편집위원회에 제출된 일자로 한다.
- ② 원고 접수마감일은 11월 30일로 한다. 원고접수 기간의 연장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한다.
- ③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『통일문제연구』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한다.
- ④ 논문기고는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에 한하여 가능하며, 공저의 경우 한 명 이상이 박사과정생 이상이어야 한다.
- ⑤ 원고는 아래의 “II. 원고 작성요강”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여 『통일문제연구』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한다. 한글 원고의 경우, OOO(제목).hwp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『통일문제연구』에 제출되는 논문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,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- ⑦ 『통일문제연구』에 제출되는 논문의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II. 원고 작성요강

- ① 원고분량은 각주 및 표,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, 초록을 포함하여 A4 용지 15-20매 분량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원고 투고 시 저자의 소속(대학, 연구소)과 국문초록, 목차, 주제어를 제출해야 한다. 또한, 영문 원고를 투고 할 시에는 국문 초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.
- ③ 목차 및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, 항목별 대소번호는 ‘II. 1, 1), (1), ①’의 예에 따른다.
- ④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하며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한다.
- ⑤ 타인의 출판물에서 발췌 또는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출판물의 출전을 표기해야 하며, 이는 본문 또는 각주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구체적 형식은 아래의 ‘III. 출전 표시요령’을 참고한다.
- ⑥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 <참고문헌>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, 구체적 형식은 아래의 ‘IV. 참고문헌 작성요령’을 참고한다.
- ⑦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<표 1> 또는 <그림 1>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. 표와 그림의 출처는 표 또는 그림의 바로 아래에 ‘* 출처

:’라고 표기 후에 제시한다.

III. 출전 표시요령

- ① 출전은 본문 또는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(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, 월남 인명은 성명), 출판 연도, 필요한 경우 면수를 표기한다.
- ②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.
- ③ 출전 표시의 구체적인 예

- 저자 이름이 본문에 있는 경우 :

최윤식(2016)
Dattner(2015)

- 저자 이름이 본문에 있지 않는 경우 :

(최윤식, 2016).

- 페이지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 :

(최윤식, 2016, p.58).
(Dattner, 2015, pp.151-160).

-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:

김영호 외(2012)

- 동일 저자가 발행한 2편 이상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:

(배철현, 2013, 2015).
(배철현, 2015a, 2015b).

-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:

(배철현, 2013; Dattner, 2015; Williams, 2013, p.72).

- 신문, 주간지,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:

(조선일보, 2016/1/1, p.1).
(월간조선, 2015/1, p.233).

- 간행 예정 또는 미간행 원고인 경우 :

(홍길동(미간)).
(Williams(forthcoming)).

- 출판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:

(Williams(no date)).

- 기관 저자인 경우 :

(한국은행, 2014, pp.63-64).
통일부(2015)

IV. 참고문헌 작성요령

- ① 참고문헌은 새로운 페이지에 <참고문헌>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.
- ②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. 즉,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
- ③ 저자 이름, 출판 연도, 제목(또는 책 이름), 출판 정보의 사이에는 마침표로 구분하며, 출판사와 페이지 범위의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한다.
- ④ 출판 연도는 '()'안에 기재하며, 페이지의 범위는 'p.'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⑤ 동일한 저자가 발간한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열하며,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출판 연도 뒤에 a, b, c를 붙여 구분한다.
- ⑥ 저작물의 제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논문, 기사는 이중따옴표(“ ”)로, 저서는 이중격쇠(『 』)로 표시한다.
- ⑦ 국문 저서나 간행물 이름은 이중격쇠(『 』), 신문사명은 격쇠(「 」), 논문 제목은 이중따옴표(“ ”)로 둘러싼다.
- ⑧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.
- ⑨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,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 문헌, 기타 외국어 (일본어, 중국어, 러시아어 등) 문헌 순으로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.

⑩ 여기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(사단법인)통일문제연구원의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.

⑪ 참고문헌의 구체적인 예

1) 저서

- 저자가 1인인 경우 :

백응택. (1987). 『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』. 서울: 대원출판사.

Thiel, Peter. (2014). 『Zero to One 』. New York: Crown Business.

- 저자나 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:

최용호 · 최용성. (2008). 『6·25 전쟁의 이해』. 서울: 양서각.

Jacobs, F. R. and Chase, R. B. (2012). 『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』. 3rd ed. New York: McGraw-Hill Education.

- 같은 저자가 여러 편의 논문이나 저서를 집필한 경우

배철현. (2015a). 『신의 위대한 질문 :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』. 서울: 21세기북스.

_____. (2015b). 『인간의 위대한 질문 :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』. 서울: 21세기북스.

조성훈. (2004). “한국전쟁 포로 관련 자료 연구와 해제.” 국사편찬연구소 『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』, 231-261.

_____. (2011). 『한국전쟁과 포로』. 서울: 선인.

2) 학위논문

유숙현. (2008). “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체험과 송환선택.” 『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』.

3) 번역서

스미스, 다니엘. 최윤영 옮김. (2016). 『역사를 바꾼 50가지 전략』. 서울: 시그마북스.

4) 학회지, 월간지,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사

김병열. (2000). “1949년 제네바 제Ⅲ조약 제118조에 관한 일고찰: 한국전쟁에서의 포로교환을 중심으로.” 서울국제법연구원 『서울국제법연구』, 제7권 제1호, 35-49.

Forst, C. A. (2007). “Credit rating agencies in capital markets: A review of research evidence on selected criticisms of the agencies.” 『Journal of Accounting, Auditing & Finance』, 22, 469-492.

5) 발표논문

허만호. (2012). “한국과 필리핀에서의 납치사례 : 국내 및 국제적 해결전략. 북한인권시민연합.” 『제35회 NKHR 학술토론회』, 95. (11월 21일).

6) 일간지,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

「조선일보」. (1953). “찾아달라! 남편을, 아들을 , , , 피눈물 어린 가족들의 호소.” (8월 14일), 2.

김재영. (2016). “여전한 마부의 논리.” 「서울신문」, (1월 15일).

Schmitt, E. & Sanger, D. E. (2015). “As U.S. Focuses on ISIS and the Taliban, Al Qaeda Re-emerges.” 「The New York Times」, (Dec. 29).

7) 인터넷 자료

이미일. (2005). “가족회 인사말.” <http://www.kwafu.org/korean/about1.php> (검색일: 2016. 1. 11).

이미일. (2005). “가족회 인사말.” <http://www.kwafu.org/korean/about1.php> (검색일: 2016. 1. 11). (1/10 Bar).

▶ 발행규정

① 『통일문제연구』는 1년에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, 발행일은 12월 25일로 한다.

- ② 『통일문제연구』 발행인은 (사단법인)통일문제연구원 원장으로 한다.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, 편집위원장은 (사단법인)통일문제연구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『통일문제연구』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(사단법인)통일문제연구원에 귀속되며,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(사단법인)통일문제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. 단,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며,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심사가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『통일문제연구』의 투고 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한다.